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6
----------	-----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진부장례식장이 건립 운영됨에 따라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여 운영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례식장의 시설 사용료가 인근 지역의 장례식장과 대비 현저히 낮아 현실화 조정하여 운영비를 확충하는 등 장례식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례식장 명칭 및 위치 개정 : 조례 제2조

- 평창장례식장 :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 진부장례식장 :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로 1970-11

나. 시설 사용료 개정 : 조례 제9조 [별표 1] 장례식장 시설사용 기준

- 현 행

시설명	식당	분향소	안치실	염사료
사용기준	1일	1일	1일	1회/1구
사 용 료	68,400원	22,800원	22,800원	57,000원

※ 장례식장 시설 사용시간은 자정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 즉시 1일로 본다.

- 개 정

시설명	분향실	접객실	안치실	염습료
사용기준	1일	1일	1일	1회/1구
평창장례식장	32,000	96,000	32,000	80,000
진부장례식장	41,000	115,000	40,000	80,000

※ 장례식장 시설 사용시간은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2. 10. 11 ~ 10. 30)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사용수수료 심의결과 : 원안동의

(5) 평창군조례규칙심의 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동의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를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장례식장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평창장례식장: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2. 진부장례식장: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로 1970-11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분향실
2. 접객실

제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시설의 장)”을 “(시설관리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수(이하“시설의 장”이라 한다)가하되”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위탁시 대행업자는 시설의 장”을 “민간위탁 시 대행업자는 군수”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민간위탁시”를 “민간위탁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의 장은”을 “군수는”으로, “수입지출등”을 “수입지출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시설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얻어야”를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의 장은 사용승인시”를 “군수는 사용승인 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승인의 취소등)”을 “(사용승인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승인”을 “군수는 사용승인”으로,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장은 사용”을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사용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위반하였을 때”를 “위반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천재지변등”을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능하게 된 때”를 “불가능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2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로, “이를 변상”을 “변상”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료 징수등)”을 “(사용료 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하며 시설의 장이”를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불가”를 “불가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여사망자 또는 시설의 장이”를 “행여사망자의 경우나 군수가”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사용기간중”을 “사용기간 중”으로, “과실로 인하

여”를 “과실로”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례식장 시설사용 기준(제9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시설명	분향실	접객실	안치실	염습료
사용기준	1일	1일	1일	1회/1구
평창장례식장	32,000	96,000	32,000	80,000
진부장례식장	41,000	115,000	40,000	80,000

※ 장례식장 시설 사용시간은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u></p>	<p><u>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2조(위치) 장례식장은 <u>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04번지, 산67-2번지에 둔다.</u></p>	<p>제2조(위치) 장례식장은 다음과 같이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평창장례식장: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u> 2. <u>진부장례식장: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로 1970-11</u>
<p>제3조(시설의 용도) 장례식장에는 다음 <u>각호</u>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분향소</u> 2. <u>식당</u> 3. · 4. (생 략) 5. <u>기타</u> 필요한 시설 	<p>제3조(시설의 용도) ----- ----- <u>각 호</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분향실</u> 2. <u>접객실</u> 3.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
<p>제4조(시설의 장) ①장례식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은 <u>군수(이하 “시설의 장” 이라 한다)</u>가 하되 필요시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u>민간위탁시</u> 대행업자는 <u>시설의 장의</u>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p>	<p>제4조(시설관리 및 운영) ① ----- <u>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u>가 하되 ----- -----.</p> <p>② <u>민간위탁 시</u> 대행업자는 <u>군수</u>----- -.</p>

제6조(예산회계) ①장례식장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균비로 충당한다. 다만, 민간위탁시 대행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시설의 장은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승인) ①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인우보 증서를 첨부하여 시설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설의 장은 사용승인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등) ①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장은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제6조(예산회계) ① -----
----- 필요한 -----
-----, ----- 민간위탁 시

-----.

② 군수는 -----
-- 수입지출 등 -----
-----.

제7조(사용승인) ① -----
----- 사용하려는 -----

----- 군수에게 사용승인
을 받아야 ----.

② 군수는 사용승인 시 -----

-----.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사용승인-----
--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사용승인-----

--.

1. -----
---- 위반한 경우
2. ----- 위반

때

3. 천재지변등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기타 시설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 징수등) ① 사용 신청을 한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후납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납부 후 장례식장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형편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 행여사망자 또는 시설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① (생략)

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 변상-----.

제9조(사용료 징수 등) ① -----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가 -----.

② ----- 불가능 -----.

③ 행여사망자의 경우나 군수가 -----.

제10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례식장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평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사용기간 중 -----
----- 과실로 -----

-----.

제11조(준용) 이 조례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 없으므로 미 작성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연락처	(033) 330 - 4830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장례식장 영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 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

④ 장례식장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게시한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조정(안)

장례식장의 시설 사용료가 지역주민 복지혜택 차원에서 저렴한 비용 부담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인근 지역 등의 장례식장과 대비 현저히 낮아 지역주민의 부담이 가지 않은 범위에서 사용료를 현실화 조정하여 평창·진부장례식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장례식장 현황

시설명	개장일	소재지	시설 내용	관할 구역
평창 장례식장	98. 9. 3.	평창읍 종부로 61	분향실 4, 접객실 3, 안치실 6구 등	평창, 미탄, 방림, 대화
진부 장례식장	12.12월중 개장 예정	진부면 오대천로 1970-11	분향실 2, 접객실 2, 안치실 3구, 발인실 등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 평창장례식장 운영분석

○ 수지분석(2011년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수 익
153,802	142,853	10,949
시설사용료 75,873	장의용품 구입비 37,964	
장의용품판매 77,929	인건비 49,865	
	시설유지비 19,945	
	운영비(난방·전기·수도·가스료) 35,079	

○ 수입현황(2010~11년도)

(단위 : 천원)

구분	이용건수	계	분향실	접객실	안치실	염습료	장의용품
2010년	220	147,142	12,312	36,114	13,680	9,462	75,574
2011년	243	153,802	13,589	39,462	15,298	7,524	77,929

○ **사용료 현황**

구 분	1회사용료 (3일장)	분향실	접객실	안치료	염습료	비 고
신설(98. 9. 3)	357,000	20,000	60,000	20,000	57,000	
개정(03. 10. 4)	399,000	22,800	68,400	22,800	57,000	(현재)
인 상 액 (%)	42,000 (11.8%)	2,800 (14%)	8,400 (14%)	2,800 (14%)	-	

※ 장례식장 개장이후 2003. 10. 4. 1차 인상하여 1회 사용료인 357,000원에서 399,000원으로 42,000원(11.8) 인상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타기관 평균 사용료 현황**

(단위 : 원)

시 설 명	조사시설	1회사용료	분향실	접객실	안치료	염습료
평균 사용료	10개소	793,450	117,270	46,330	61,630	117,760
지방공사 의료원	4개소	1,004,900	88,200	139,000	63,600	170,000
도내 직영 시설	3개소	500,000	88,000	-	62,000	50,000
전국 보건의료원	3개소	838,000	175,600	-	59,300	133,300

○ **1건당 장례비용(200명 기준) ----- 5,459,000원**

(단위 : 원)

○ 장의용품 구입 : 1,500,000	○ 식료품 구입비 : 2,400,000
○ 시설사용료 : 342,000(6.3%)	○ 화환구입비 : 200,000
○ 염습료 : 57,000(1.0%)	○ 장의차 임대료 : 350,000
○ 접객실 인건비 : 310,000	○ 기타비용 : 300,000

□ 시설 사용료 조정안 검토

○ 시설사용료 조정(인상) 검토배경

- ▶ 현재의 시설사용료는 2003. 10. 4. 조정된 금액으로 그동안 장례식장 운영비 부담증가 및 타지역 시설사용료 대비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등으로 사용료 조정(인상)이 불가피 거론되어 지역주민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 ▶ 우리 장례식장의 1회 시설사용료(399,000원)는 도내 지방공사 의료원 4개소 평균사용료의 39.7%(1,004,900원), 도내 자치단체 직영 3개소 평균사용료의 79.8%(500,000원), 전국 보건의료원 3개소 평균사용료의 47.6%(838,000원)에 그치고 있음.

○ 평창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조정(안)

구 분	1회(3일) 사용료	분향실	접객실	안치료	염습료	비고
현 재	399,000	22,800	68,400	22,800	57,000	
인상액(%)	161,000 (40.3)	9,200 (40.3)	27,600 (40.3)	9,200 (40.3)	23,000 (40.3)	
조정액	560,000	32,000	96,000	32,000	80,000	

○ 조정안 검토사항

- ▶ 평창장례식장 조정안의 1회사용료 560,000원은 지방공사 의료원 평균사용료의 55.7%, 도내 자치단체 직영 3개소에 대하여는 112.0%, 전국 보건의료원 3개소에는 66.8%에 상응하며, 도내 자치단체 직영 일부 시설의 경우 시설사용료에 대한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음.
-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설 사용시간은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함.
 - 오전 12시 이전(오전)에 안치될 경우(3일) : 560,000원, 40.3% 인상
 - 오전 12시 이후(오후)에 안치될 경우(2일) : 400,000원, 0.3% 인상
- ▶ 시신안치의 오전·오후 평균비율이 50:50이므로 실제 인상효과는 20.3%임.

□ 진부장례식장 사용수수료 책정

○ 면적비율 요율 산정

구 분	분향실	접객실	안치료	염습료	비 고
평창장례식장	24m ²	177m ²	50m ²	-	평균, 대표
진부장례식장	31m ²	202m ²	62m ²	-	
①면적 비율	1.29	1.14	1.24	-	
②연면적 비율	1.26	1.26	1.26	-	평창 1,046m ² 진부 1,319m ²
적용(①+②)/2	1.27	1.20	1.25	동일	(조정요율)

- ▶ 평창장례식장과 시설을 비교하여 연면적 및 각실 면적 등을 산정후 실별 요율을 산정.

○ 사용수수료 책정안

구 분	1회사용료 (3일)	분향실	접객실	안치료	염습료
평창장례식장	560,000	32,000	96,000	32,000	80,000
조정요율	-	0.27	0.20	0.25	-
조 정 액	99,000	8,000	18,000	7,000	-
책 정 액	668,000	41,000	115,000	40,000	80,000

- ▶ 진부장례식장 책정안의 1회사용료 668,000원은 지방공사 평균사용료의 66.5%, 도내 자치단체 직영 3개소에 대하여는 133.6%, 전국 보건의료원 3개소에는 79.7%에 해당됨.
- ▶ 오전 12시 이전(오전)에 안치될 경우(3일) : 668,000원 부담
오전 12시 이후(오후)에 안치될 경우(2일) : 472,000원 부담

□ 타지역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현황

(단위 : 원)

시설명	1회사용료	분향실	접객실	안치료	염습료	비고
평창장례식장	399,000	22,800	68,400	22,800	57,000	
원주의료원	1,150,400	84,000	168,000	64,800	200,000	
강릉의료원	876,000	72,000	100,000	60,000	180,000	
영월의료원	1,186,800	100,800	180,000	64,800	150,000	
삼척의료원	806,400	96,000	108,000	64,800	150,000	
홍천군장례식장	350,000	76,000	-	24,000	50,000	관내
	670,000	152,000		48,000	70,000	관외
화천군장례식장	340,000	50,000	-	50,000	40,000	관내
	640,000	100,000	-	100,000	40,000	관외
양구군장례식장	350,000	50,000	-	50,000	50,000	관내
	650,000	100,000	-	100,000	50,000	관외
청송군보건의료원	940,000	200,000	-	80,000	100,000	
태안군보건의료원	725,000	127,000	-	48,000	200,000	
임실군보건의료원	850,000	200,000	-	50,000	100,000	